

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특정소방대상을 관계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.

「소방시설법 시행규칙」 등 개정 내용

1.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서식 변경(시행 '21.04.01.)

-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통합 변경(종합정밀점검, 작동기능점검)
 - 제19조(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) 제1항 - '별지 제21호서식 활용'
- 자체점검의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(종합정밀점검, 작동기능점검)
 - 제19조(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) 제3항

※ 변경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(다운로드) 활용

- 서초소방서 홈페이지 → 민원안내 → 민원서식 → 소방안전관리 →
 - ⑪ 자체점검(종합정밀, 작동기능)실시결과 보고서 → 다운로드 활용

2.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(시행 '20.08.14.)

- 근 거: 「소방시설법 시행규칙」[별표1] 제3호가목 (제18조 관련)
- 변경내용: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(작동기능점검 → 종합정밀점검 대상)
 - ※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인점검은 인정되지 않음.

※ 적용 예시

- ① (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사용승인일이 1월인 건물)-1년에 2회이상 보고서 제출 의무
 - 2022년 1월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실시, 결과보고서 제출
 - 2022년 7월: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, 보고서 제출
 - ② (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하는 사용승인일이 1월인 건물)-1년에 1회이상 보고서 제출 의무
 - 2022년 1월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 실시, 결과보고서 제출
- ※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건축물 관계인(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)에게 있습니다.

3.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(시행 '20.08.14.)

- 근 거: 「소방시설법 시행규칙」 제19조
- 변경내용: 결과보고서 제출 기준 30일 ⇒ 점검일로부터 **7일 이내** 제출

※ 문의사항: 서초소방서 예방과 (☎ 02-591-0119)

서 초 소 방 서 장



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



(보고서 서식)

(점검동영상)

*상단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보고서 서식(좌측) 및 소방시설 점검 동영상(우측)을 보실수 있습니다.

■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

-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- 가. 작동기능점검: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
- 나. 종합정밀점검: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.
- 다. 관련근거: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, 제19조

■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등 일람표

구분	종합정밀점검	작동기능점검
적용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○ 물분무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㎡ 이상인 대상(위험물제조소등 제외) ○ 다음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㎡ 이상인 대상(9개 업종) (유형주점, 단란주점, 영화상영관, 비디오물감상실업, 고시원, 복합영상물제공업, 노래연습장, 산후조리원, 안마시술소) ○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○ 공공기관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천㎡ 이상인 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실시 다만, 다음 대상은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-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, 위험물제조소등 ○ 종합정밀점검 실시후 <u>6개월이 된 대상</u>(특급제외) ○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<u>소방안전관리자</u>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점검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방시설관리업자(소방시설관리업체) ○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인 · 소방안전관리자 ○ 소방시설관리업자(소방시설관리업체)
점검 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방시설관리업체 위탁점검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(http://www.kfma.kr) 점검능력평가 공시업체 참고 '소방시설법' 제33조의2(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)에 따른 '2021년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공시'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<u>6개월이 되는 달</u>에 실시 ○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</u>까지 실시 ○ 그 밖의 점검대상 : 연중 실시
	<p>☞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점검을 하지 않으면 미실시에 해당함. 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</p>	
점검 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 1회 이상 실시(매년) ○ 단,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실시(연2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1회 이상 실시(매년)
점검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(영 별표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수압력측정계, 절연저항계, 전류전압측정계, 열감지기시험기,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 점검
결과 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○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(www.somin.go.kr)제출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방민원센터(www.somin.go.kr)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온라인 제출(2016.7.1.시행) 	
	<p>☞ 7일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합니다.(200만원 이하 과태료)</p> <p>☞ 결과보고 서식: 서초소방서 홈페이지→민원안내→민원서식→소방안전관리→⑪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다운로드</p>	

붙임 2

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서식[예시]

소방시설등 수리·보수가 완료된 사진을 e-메일 kdh328bb@seoul.go.kr로 보내주시면,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. ☎ 02-532-0119

건물명			건물용도		
관계인 (대표자)	성명		소방안전 관리자	성명	
	전화번호			전화번호	
소방공사업체			전화번호		
조치결과	조치명령 건별로 사진, 동영상(모바일),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				

조치결과(예시) - 별첨 가능

1. 소화기구 교체 (개소)

사진 첨부	사진 첨부
변경 전	변경 후

2.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추가 설치

사진 첨부	사진 첨부
교체 전	교체 후

3. 감지기 교체 (개소)

사진 첨부	사진 첨부
교체 전	교체 후

《노후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》

노후 소화기의 교체

- ▶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.
- ※ 다만,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,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
-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소화기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,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즉시 교체

[축압식소화기]



[가압식소화기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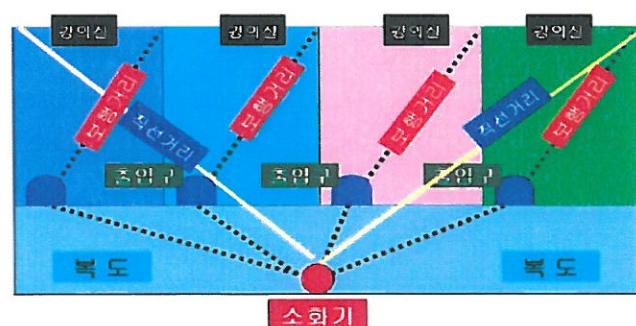
- ▶ 교체한 소화기는 관할 시·군·구청 담당부서(ex. 청소행정과)를 통해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.

- ▶ 습기나 직사광선은 피하고,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▶ 통행에 지장이 없고,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※ 바닥으로부터 높이 1.5m 이하에 설치하고, "소화기"라고 표시한 표지 부착
- ▶ 33㎡ 이상 구획된 실 및 각 층마다 보행거리 기준에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※ 보행거리기준 : 소형소화기 20m, 대형소화기 30m 마다 설치

[소화기 위치표지]



[보행거리]



소화기 관리방법 (월 1회 이상 점검)

- ▶ 소화기 용기가 변형·손상·부식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▶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으며 견고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
[변형·손상·부식된 소화기]



[안전핀]



- ▶ 지시압력계가 정상(녹색범위)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
[정상(녹색범위)]



[비정상]





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



◆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,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특정소방대상을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통해 자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운영하오니 소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◆ 소방훈련 기준

- (관계인 의무) 특정소방대상을 관계인이 근무자 등에 대해 소방훈련실시
(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)
 - 훈련주체 : 특정소방대상을의 관계인(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)
 - 훈련대상자 : 그 특정소방대상을에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
 - 훈련의무대상물 :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것
 - 훈련회수 : 연 1회 이상(소방서장이 1회 추가 가능, 특급·1급은 합동훈련 가능)
 - ※ 공공기관은 연 2회 실시(자체훈련 1회, 소방관서 합동훈련 1회)
 - 훈련내용 : 소화·통보·피난
- (의무위반 제재) 훈련 미실시한 관계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◆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

- 설치장소 :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
- 지원내용
 - 소방훈련 안내(훈련의무, 기록·보관 및 지도): 532-0119(검사지도팀)
 -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지원사항 안내 : 591-0119(민원실)
 -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훈련지원 : 532-4215(대응총괄팀)
 - 해당 특정소방대상을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
 - 실제 대응력 향상이 될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도
 - 합동소방훈련 요청 시 소방차량 등 장비 출동 결정

서초소방서장



소방훈련 준비절차 및 요령



준비절차

1. 훈련준비

- ▶ 훈련방법 결정, 대피장소 사전지정, 자위소방대 개별임무 확인, 훈련안내 멘트

2. 훈련장소 확인 점검

- ▶ 모의화재 발생위치, 대피유도 안내위치, 대피통로, 대피장소 및 위치표시(라인설치), 훈련안내문 부착, 훈련용 장비확인

3. 훈련안내(실시 1일전)

- ▶ [방송 및 안내문 게시] 훈련일시 및 시간, 훈련방법, 대피장소, 대피 훈련 시 주의사항(가스차단 및 전기소등), 안내문 게시

훈련요령 (훈련 당일)

- ▶ 자위소방대 관계자 비상벨 및 방송설비등 활용 화재발생 안내
- ▶ 119신고 요령 훈련
 - ※ 화재발생위치(00구 00동 00로 00건물), 발화건물 층수, 화재의 종류
신고자 전화번호 등
- ▶ 피난대피유도 중점 훈련 : 자위소방대 대피 유도담당 피난통로 곳
곳에 위치하여 피난안내
- ※ 방재실(피난방송) : 0동 0층 화재발생 및 안내요원 따라 00지역으로
대피(대피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유도)
- ▶ 자위소방대 소화담당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등 활용 소화훈련 실시